

#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양해각서

경기문화재단(이하 “문화재단”)과 경기도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)은 2013년 양 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교육청의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, 양 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교육·체험활동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(협약 분야 및 방법)** 교육청과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·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.

## 1. 교육청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·체험프로그램 연계

-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

## 2.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

-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혜자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

## 3.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
- 교직원 연수를 위한 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, 연구 활동 교류
- 문화예술관련 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상호 협조

**제3조(실무협의회)**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며, 제반 업무 추진은 실무위원 협의 하에 한다.

**제4조(비밀유지)** 두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 경기문화재단은 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 단, 경기도교육청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5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**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단,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약의 해지 및 변경)**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타 사항)**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. 10. 10.



경기문화재단

대표이사 엄기영

엄기영



경기도교육청  
부부청사

부교육감 서현상

서현상